

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2622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1년 9월 6일
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, 관련 법률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중 ‘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외·단절된’을 ‘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’로 하고, ‘시민’을 ‘주민’으로 수정함.(안 제1조 수정)

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외·단절된”을 “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”로 하고, “시민”을 “주민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수정^(제안)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·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<u>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라 소외·<u>단절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시민</u>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<u>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주민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1인 가구”란 1명 <u>이 단독으로 취사·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</u> <u>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

<p>2. 3. (생략)</p> <p>4. “사회적 고립가구”란 가족, 이웃,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<u>1인 가구</u>를 말한다.</p>	<p>1. 2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가구</u>----- -----.</p>	<p>1. 2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가구</u>----- -----.</p>
<p>5. (생략)</p> <p>제6조(지원대상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.</p>	<p>4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제6조(지원대상) 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4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제6조(지원대상) 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<u>1인 가구</u>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</p> <p>2.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<u>1인 가구</u> 중 건강상태, 경제상태,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</p>	<p>1. <u>경제적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----- -----<u>가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1. <u>경제적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----- -----<u>가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3. 4. (생략)</p>	<p>3. 4. (현행과 같음)</p>	<p>3. 4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·단절된
1인”을 “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”로, “사회적 고립
가구의”를 “주민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
제4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1인 가구”를 “가구”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1인 가구 중 경제적”을 “경제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
“1인 가구”를 “가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5. (생략)

제6조(지원대상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.

1.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
2.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, 경제상태,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

3. 4. (생략)

4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제6조(지원대상) -----

-----.

1. 경제적-----

2. -----
가구-----

3. 4. (현행과 같음)